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02 | 2023.09.18 (2023.09.11~09.1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9.11~9.17)

9/11~9/17까지 발표된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과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방안」**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계획들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는 맞춤형 실천전략으로 정부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대혁신과 구조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미디어 분야 세부 전략이자,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의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향후 수년 간이 골든 타임인 만큼, 혁신을 통하여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의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입법(행정)예고】**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단 내 업종특례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을 통합 시험으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조정하여 경영평가비중을 줄이고 신인도평가에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항목 포함, 시공능력평가에 건설사업자의 실적, 기술능력 및 품질·안전관리 등 실제 시공능력의 반영도 개선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중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의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으로는 지난 9월 1일 21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최된 이후 대정부질문(9/5~9/8)가 마무리되었고, 금주에는 각 교섭단체별 대표연설(9/18(월), 9/20(수) 양일간 예정)과 안건 처리를 위한 제8차 본회의가 9/21(목)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2023년 국감계획계획서 채택을 위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거나 양당 간사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에서는 11월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9/21(목)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엑스포 유치 진행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발표 (과기부) 5
-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방안」 발표 (과기부) 6
- 한-미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과기부/개보위) 8
-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 (금융위/금감원)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통상자원부) 1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부) 10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 10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국토교통부) 11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정위) 13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금융위) 1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보위)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7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8
-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산업통상자원부) 19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9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22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5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2인) 24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의원 등 10인)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4인) 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의원 등 10인) 2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의원 등 12인) 2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0인) 2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1인) 2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3인) 28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28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29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2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2인) 30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3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9.11~9.17) [바로가기](#)

-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지적재산권) 39
- 가상자산 시세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로 외화를 불법 반출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해당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 (조세) 39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실태 일괄점검 (금융) 39
- 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및 향후 대응방안 (금융) 3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발표

2023-09-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는 맞춤형 실천전략으로 정부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대혁신과 구조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미디어 분야 세부 전략이자,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AI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①워크플로우별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 ②인재 양성, ③미디어·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3대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임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방안」 발표

-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 '24년 9,09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2023-09-13

그간 정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의 후속으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3.1),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방안’(’23.4)’를 연속적으로 발표·추진하는 한편, ‘뉴욕구상(’22.9)’, ‘캐나다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22.9)’, ‘파리 이니셔티브(23.6)’, ‘한-아세안 인공지능 유스 페스타(23.9)’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 정립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협력을 확대해 왔음

9/13(수) 정부 관계자, 국내 인공지능 기업, 스타트업 및 청년창업가, 인공지능 연구자 등이 참여한 “대한민국 초거대 AI도약” 행사에서는 디지털 모범 국가로의 도약과 우리 인공지능의 글로벌 도전을 본격화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출시를 축하하고, 개방형 혁신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논의들을 진행하였음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국제협력 확대,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등 디지털 모범국가에 향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하였음

첫째,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캐나다·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새롭게 추진함. 또한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인공지능 신뢰성 정책·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함**

* 한·미, 한·일 ICT 정책포럼,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OECD, 유네스코, GPAI 등

둘째, 국민 편의를 향상하고,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4년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

셋째, ‘뉴욕구상(’22.9)’와 ‘파리 이니셔티브(’23.6)’를 통해 선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여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키로 함**

넷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강화키로 하는 바, **치안(CCTV),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하고,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증 체계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키로 함**

<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 비전 및 과제 >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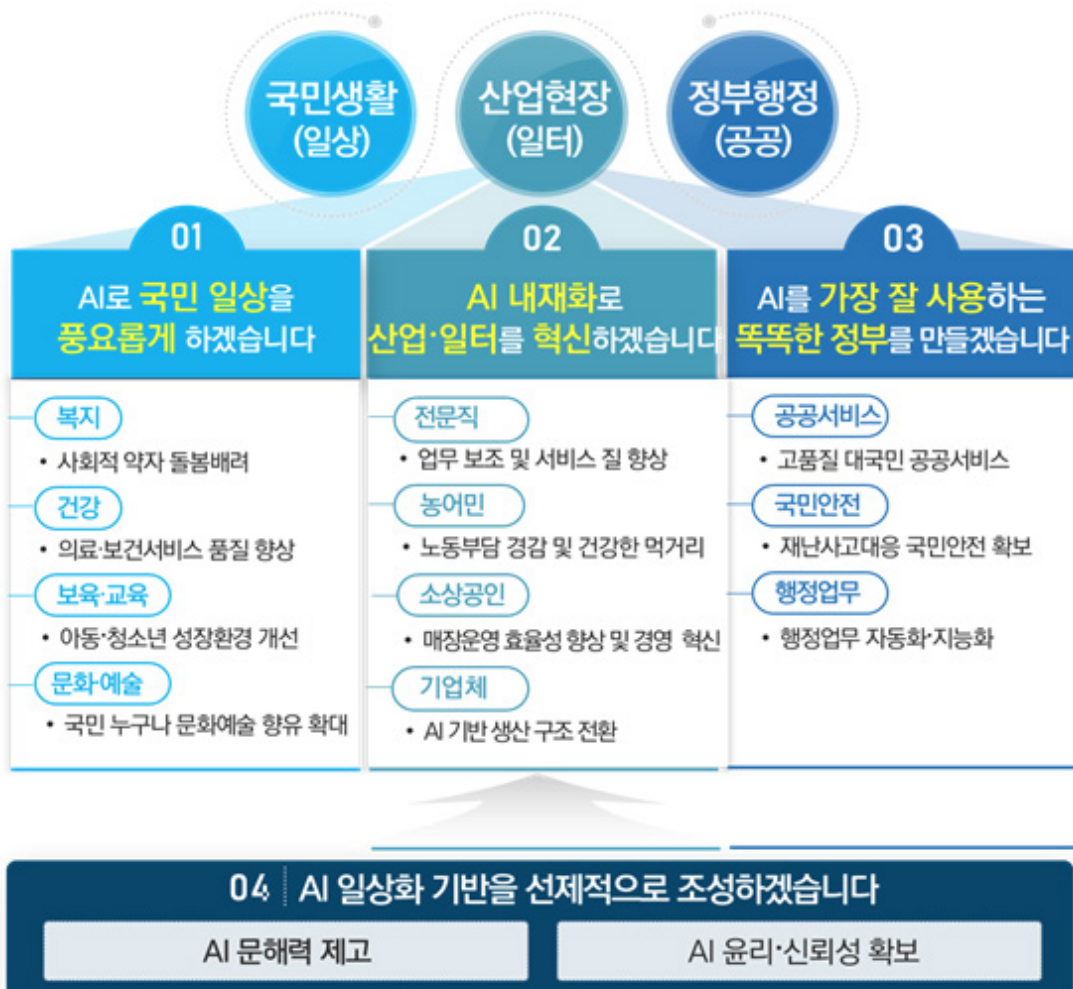
“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 ”

추진전략

범부처 역량 결집, AI 일상화의 체계적 추진
AI를 일상·일터·공공에 접목, 체감 가능한 혁신 창조



세부 추진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미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2023-09-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합의한 사항들을 발전·이행하기 위해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을 개최, 미 정부기관(국무부, 국가통신정보관리청,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청) 및 국제기구(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디지털 신질서 정책을 소개하며 지지를 요청하고, AI, 오픈랜, 6G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양국은 5G, 6G, Open RAN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
- ②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제3국에서 5G, 오픈랜 등 신뢰할 수 있는 통신 공급망 다양성을 제고하도록 기술 지원, 프로젝트 준비 등에서 협력
- ③ 양국은 디지털 신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위험에 대응하여 이에 관한 디지털 국제규범을 공동 논의하고 글로벌 연대 방안을 모색
- ④ 양국은 혁신적인 AI 생태계를 보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가능케 하는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다 자기구에서 협력
- ⑤ 양국은 탄력적이고 견고한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에 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위해 R&D, 인적교류 등 협력을 강화

금융위/금감원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

2023-09-1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함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 '23.6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3월말(2.01%) 대비 +0.16%p 상승하였으나 상승추세는 크게 둔화*되어 금융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함

*부동산 PF 연체율 추이(%): ('22년말) 1.19 → ('23.3월말) 2.01 → ('23.6월말) 2.17

-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요인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PF 사업장 이해관계인들이 우선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 형성

②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 「PF 대주단 협약」은 '23.8월말 현재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그 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 정상화·연착륙에 협약이 적극 활용되고 있음
-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 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됨
-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0%를 차지하여 본 PF 대비 이해관계자 간 조정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에 「PF 대주단 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③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

- 정부는 관계기관·금융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PF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임
- 대주단과 시행사는 단순한 만기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금 공급과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도 당부함

II. 주요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24-03-15 시행예정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28조제1항 신설, 제142조의2 신설)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3-15 시행예정
-----	---	--------------------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개설 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특정한 사유로 기한 내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못하거나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5조제1항, 제5조의2 신설, 제7조, 제29조의2 신설, 제29조의3 신설 등)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9-12 시행 (일부 조항은 별도 규정)
-------	-------------------------------	---------------------------------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며, 건축물의 층고(層高)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아파트의 대피공간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병원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소규모인 건축물의 용도를 새롭게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절차적 편의 제고 (제15조제6항제1호가목2) 단서 신설)

- 재해복구 등의 용도로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구조내력 확보 및 피난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②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 강화 (제19조제11항)

-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배치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도록 함

③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正北)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④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강화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 신설)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함

⑤ 동물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소규모인 건축물의 용도 재분류 (별표 1 제3호가목 신설 및 별표 1 제4호차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던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가운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새롭게 분류함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2023-10-19
시행예정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확산을 도모하고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모빌리티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

이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절차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모빌리티 개선계획이 실시되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 결과 및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받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간적·시간적 범위의 적정성, 자원(財源) 조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
-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②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제5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 및 지정이유 등을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③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절차 등 (제7조)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및 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모빌리티 서비스 및 기술 등과 관련된 법령 및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실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허용 여부 등을 심사할 때에는 모빌리티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 해당 모빌리티 서비스 및 기술 등의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때에는 실증특례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비용 보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및 기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제10조)

-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규제특례를 받은 자의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규제특례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인 조건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도록 함
- 규제특례를 받은 자는 모빌리티 서비스 및 기술 등의 이용자에게 규제특례의 구역·기간·규모, 규제특례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인 조건 및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등을 알리도록 함

⑤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제12조 및 제13조)

-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령정비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도출된 이용자 편의 정도 및 관련 안전사고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로 법령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판단 결과에 따라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9-22
시행예정
(일부 조항은 별도 규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던 것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반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하는 경우'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56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장례 또는 혼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같은 위반행위를 3년 이내에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2,500만원, 3차 위반 시 5,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2조제5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2항제1호 등)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2024-09-15
시행예정

선불충전금에 대해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며,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14호, 제19조제2항제4호 신설, 제25조의2 신설, 제25조의3 신설, 제28조제3항제1호 등)

종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의 통지 의무 등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9. 15. 시행)됨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하여야 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의 설치 (제5조)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②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15조의3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일평균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③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함

④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 및 제27조의2 신설)

-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범죄, 화재, 재난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도록 하되, 드론을 이용한 촬영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

⑤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에 관한 사항 (제29조의9 신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절차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⑥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및 이의신청 (제29조의11 및 제29조의12 신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유형·규모,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⑦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의2 신설)

-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분석·점검·관리 등의 조치 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협의를 위해 해당 시스템 이용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제31조의2 신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⑨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제3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통지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⑩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제40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었거나 개인정보처리자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려는 때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등을 먼저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하도록 함

⑪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신설)

-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열람을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등이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⑫ 과징금 산정기준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신설, 별표 1의5)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매출액을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재해로 인해 자료가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간 간격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9.11 ~10.21

수소법 제22조에 따르면 수소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소법 시행령 제28조는 수소산업의 집적화를 이룬 지역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소산업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소특화단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기준 (안 제28조 제1호, 제3호)

- 수소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유도지역도 포함
-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 중 수소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으로 개정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전화: 044-203-3975, 팩스: 044-203-4766\)](tel:044-203-397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9.13 ~10.23
---------	--------------------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별 정지 기간이 불명확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 (안 제9조의2 및 별표 7 신설)

- 전력기술인의 인정 정지 기간을 3년의 범위로만 규정하던 것을 사유별 행정처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위반 시 인정 정지 기간을 가중하도록 규정

②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 (안 제25조의4 신설)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사유 마련

③ 저압 기준 개정사항 반영 (안 제20조)

- 저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간 정합성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④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사항 반영 (안 별표 1·2)

- 철도신호기능사와 전기철도기능사가 철도전기신호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전력기술인과 감리원의 자격 인정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정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9.14
~10.24

산업단지 내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해 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한 토지용도에 복합구역을 포함하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방식을 일시납부에서 연기·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민간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금전의 관리현황을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산업단지 내 업종특례지구 지정신청 대상 확대를 위해 업종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한 토지용도에 복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5항)
- ②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지가 상승분으로 규정함 (안 제58조의5제1항)
- ③ 산업시설구역 내 지목변경은 개발이익이 미미하나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58조의5제2항제3호 삭제)
- ④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안 제58조의5제5항제2의3호 신설)
- 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를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8조의5제6항)
- ⑥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관리기관이 금전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금전의 연간 관리현황을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도입함 (안 제58조의5제9항 신설)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044-203-4435, 팩스: 044-203-473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2023.09.14
~10.04

국가산단에 대한 업종특례지구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업종 판단을 위해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연구개발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가산단에 대한 업종특례지구 신청요건을 최소면적 10만㎡ 이상, 용지 소유자 2/3 동의로 완화 (안 제7조의2 제2항)
- ② 신산업 등 입주업종 판단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안 제15조의2 신설)
- ③ 연구개발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을 20%이상으로 완화 (안 별표1)
- ④ 업종특례지구 제한 예외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 (안 별표2)
- ⑤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의 법령명 등 현행화 (안 별지 제2호서식)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044-203-4435, 팩스: 044-203-4739)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09.12
~10.23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 2. 3.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설치 의무화 되었으나 구체적인 환기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을 통합 시험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 (안 제24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 ②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 (안 [별표 1의3])
 -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 ③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 (안 [별표 4])
 -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④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 (안 [별표 4])
 - 입원실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
 - 음압격리병실의 다인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신규 마련

⑤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안 [별표 4])

-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
-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3개 이상을 설치

⑥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 (안 [별표 4])

-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06, 팩스: 044-202-3924)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09.12
~10.23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사료관리법이 일부개정(‘23.12.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현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HACCP 교육훈련이 의무 사항이 됨에 따라 교육의 종류를 신규와 정기로 구분 (안 제16조, 제17조)
- ② HACCP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별표 5)
- ③ 표시사항 준수 의무 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안 제14조)
- ④ 제조업 재등록 제한 대상자가 제조업 등록 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 (안 별표 11)
- ⑤ 사료성분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 (안 제12조, 별지 6, 별지 7)
- ⑥ 사료검사원 자격 대상 확대 (안 제27조)
- ⑦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 기준 완화 (안 별표 3)
- ⑧ 사료 폐기 조치 대상 범위 확대 (안 제34조)
- ⑨ 명칭 수정 (안 별표 1)
- ⑩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성분등록증 재발급 기간 단축 (안 별지 10)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전화번호: 044-201-2360, 팩스: 044-863-9218)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09.11
~10.23

건설사업자 대상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조정하여 경영평가 비중을 줄이고 신인도평가에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 시공능력평가에 건설사업자의 실적, 기술능력 및 품질·안전관리 등 실제 시공능력의 반영도를 개선하고, 불법행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안 별표 1, 별표2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 3 배에서 ± 2.5 배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 ②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pm 30\%$ 에서 $\pm 50\%$ 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 ③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해외건설 등 관련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515, 팩스: 044-201-554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3.09.13
~10.2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부과하는 것에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부과하기 위해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전화: 043-719-2719, 팩스: 043-719-270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023-09-12 발의

현행 법령상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및 「근로복지기본법」상 우 리사주매수선택권 등이 있음

그러나 실무상 봉급 이외의 보상방법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경우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 법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둬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342조의4 및 제342조의5 신설)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2023-09-15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및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으면 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여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에 대표자, 임원 또는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문제됨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에서도 범죄자 또는 그 공모자들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제소유자가 되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관리 기능을

보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권한당국이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FATF 권고사항15 주석서 3항,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제7호 신설)
- ②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 (안 제7조제1항제1의2호 신설)
- ③ 위반 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법률에 인터넷전문은행 등 타업권 사례를 고려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및 국내법 외에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3항제3호)

정무위원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5인)

2023-09-15 발의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최근 적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안 제2조제5호, 제5조의2 및 제6조제3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2인)

2023-09-14 발의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투자 및 이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중임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제정 추진 중인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안 제6조)
- ② 기회발전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 제30조의2 신설)
- ③ 기회발전특구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 (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허은아의의원 등 10인)

2023-09-12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중임

그러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하여, 수출 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내수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요건을 규정한 내용은 없어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가격책정 혼선 등 이용자의 불안 및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의 양성화·활성화, 이용자 신뢰 제고, 합리적인 소비자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및 제19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4인)

2023-09-12 발의

최근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게시판에 특정한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여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를 게재하는 자의 경우 대부분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이 표시되도록 하여 허위의 정보 등이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11 신설 및 제76조)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의원 등 10인)

2023-09-12 발의

현행법은 산학협력단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신기술분야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3항)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2023-09-14 발의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뜻하며,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는 것임** (안 제56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단속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의 처분은 그 중대성에 비하여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48조의2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0인)

2023-09-1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 중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자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유사 전력설비인 송·변전설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향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전력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제 49조제9호의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1인)

2023-09-15 발의

현행법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법원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특허청의 조사기록을 요청해 이를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18년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시정권고가 시행된 이후, 특허청이 아이디어 탈취행위 6건을 적발, 시정권고 하였으나, 이 중 4건은 실제로 시정되지 않는 등 시정권고 및 공표 만으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해 중소기업 등의 아이디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술탈취 분쟁에서 기업이 증거로 활용하고자 행정조사기록을 요청하여도, 현행법상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에 대한 보호수단이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에 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조사기록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의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조사 자료 열람 및 복사 근거 마련, 행정조사 기록 송부 대상 확대 및 영업비밀이 포함된 행정조사 자료에 대한 비밀심리절차 도입 등으로 행정조사 기록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이 조사기록을 적극 활용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자료 열람·복사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의2)
- ②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③ 법원에 대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의7)
- ④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20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

2023-09-15 발의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임

이런 이유로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 어렵고,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기술 환경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책임과 권한하에 산업용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11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2023-09-12 발의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받게 됨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하도록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게 됨

그런데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사업대상지역 주민은 거주환경의 변화,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환경오염 등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럼에도 현재 사업자의 이행현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곤란하여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또는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을 명령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등의 불이익 조치로 갈음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공사에 착수하거나 시설이 준공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영향평가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주민 등이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감독 현황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의 감시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이에 더하여 과징금을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의 2차 조치명령 전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금전적 불이익조치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점의 누적관리를 통해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2023-09-14 발의

현행법은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차체 중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지난 2월 10일에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 원칙에 기반하여 현행법상의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자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84조제2항, 제10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3조제1항, 제165조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2023-09-14 발의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단속·예방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친 때 등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에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는 등 환경부에 단속·감시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업 등 현행법에 따른 규제대상은 본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관리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시설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같은 관리·감독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두고 있음

현행법상 단속 대상은 주로 각 지역의 사업장(영업장)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개별 영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실제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여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관리 권한이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13조 및 제15조의2 부터 제19조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2인)

2023-09-12 발의

현행법상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중에서 자동차매매업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의 관리 기준 및 절차도 다른 자동차관리사업과 같이 해당 시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의 행정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제53조제3항 후단 삭제)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2023-09-15 발의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참여가 저조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7호가목, 제26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제11호)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9/18(월) 10:0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9/20(수) 10:0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국민의힘)
		9/21(목) 14:0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 안건 심의
법사위	전체회의	9/18(월) 14:00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타위법 심사 등
정무위	전체회의	9/21(목) 10:00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기재위	전체회의	9/18(월) 본회의 산회후	-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법안 상정 등
교육위	전체회의	9/20(수) 11:00	- 법안 상정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9/18(월) 14:30	- 법안 심사
	안전조정위	9/19(화) 14:00	- 법안 심사 - 우주정책 전담기관 관련 공청회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9/21(목) 09:3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21(목) 11:00	- 법안 의결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외통위	법안소위	9/19(화) 14:00	- 법안 심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통일부 소관)
	청원소위	9/21(목) 09:20	- 오렌지카운티 영사관 출장소 개설에 관한 청원
	전체회의	9/21(목) 10:00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법안 의결 등
국방위	전체회의	9/18(월) 09:30	- 청원 상정
	청원소위	9/21(목) 09:20	- 청원 심사
	법안소위	9/21(목) 10:00	- 법안 심사

행안위	법안1소위	9/18(월) 11:00	-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 법안 심사
	법안2소위	9/19(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20(수) 14:00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법안 의결 및 상정 -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문체위	전체회의	9/18(월) 14:00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법안 상정 등
	체육관광법안소위	9/19(화) 10:00	- 법안 심사
	문화예술법안소위	9/19(화) 14: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20(수) 14:00	-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법안 의결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법안소위	9/18(월) 14:00	-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농림축산법안소위	9/20(수) 11:00	- 법안 심사
	해양수산법안소위	9/20(수) 13: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21(목) 10:00	- 법안 심사 및 의결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산자 중기위	전체회의	9/18(월) 본회의 산회후	-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인사청문 요청안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체회의	9/19(화) 09:30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법안 상정 등
	중소벤처기업소위	9/19(화) 14:00	- 법안 심사
	산업특허소위	9/20(수) 14: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21(목) 10:00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19일 미채택시) - 법안 의결 등

복지위	전체회의	9/18(월) 14:00	- 법안 상정
	제2법안소위	9/19(화) 10:00	- 법안 의결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제1법안소위	9/20(수) 11: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21(목) 10:00	- 법안 심사
환노위	환경법안소위	9/19(화) 14:00	- 법안 심사
	고용노동법안소위	9/20(수) 14:00	- 법안 심사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9/19(화) 10:00	- 법안 심사
	국토법안소위	9/20(수) 본회의 산회후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21(목) 10:00	- 법안 의결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정보위	전체회의	9/20(수) 14:30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 관련 준비상황 점검 보고 등
인사청문 특위	전체회의	9/19(화) 10:00	-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심사
	전체회의	9/20(수) 11:00	-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심사
	전체회의	9/21(목) 10:00	-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전체회의	9/21(목) 10:00	- 업무보고(기획재정부 등)
첨단전략 산업특위	전체회의	9/18(월) 14:00	-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전력·용수 공급계획 보고
기후위기 특위	전체회의	9/19(화) 10:00	-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및 2024년도 탄소중립인지 예산에 관한 현안보고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18(월) 09:00	[사회적기업 성과 정책 포럼] - 지원받는 객체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 역할	박정·이수진(비)· 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9/18(월) 09:45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AMI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구자근 의원실, 한국전력공사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8(월) 10:00	[국회 1.5°C포럼 연속 토론회] - 자원개발 2.0 시대 이대로 열릴 수 있나	이용빈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9/18(월) 10:00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 -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	김미애 의원실, 건미포럼	의원회관 1세미나실
	9/18(월) 10:00	공항주변 드론·무인기 대응전략 세미나	강대식 의원실, Incheon Airport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8(월) 14:00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7] - 국내 OTT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18(월) 14:00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	홍정민·이재정· 김한정 의원실	전경련회관 2층
	9/18(월) 14:00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	김경만·김의겸· 최강욱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9/19(화) 09:30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9/19(화) 10:00	기술패권시대,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 토론회	강훈식·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9(화) 10:00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글로벌기업국제 경쟁력강화의원모임	국회본청 1층 3식당
	9/19(화) 10:00	초전도 기술 개발 촉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토론회	하태경 의원실, 한국초전도저온학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9/19(화) 14:30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확보를 위한 해체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민홍철· 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9/20(수) 09:30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 방안	국회철강포럼	의원회관 1소회의실
	9/20(수) 12:00	[제11차 K-바이오헬스 포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개인맞 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추진 방향	전혜숙 의원실, (사)건강소비자연대	의원회관 2소회의실
	9/20(수) 14:00	[특례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유의동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9/20(수) 14:00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시사점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변재일 의원실, 한국경영과학회	의원회관 4간담회실
	9/20(수) 15:00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원회관 2세미나실

	9/21(목) 10:00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윤미향·전용기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실
	9/21(목) 15:00	게임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	이용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22(금) 10:00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김영배·김한규·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9/22(금) 10:00	은행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접근성 소외문제와 해결 방안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9/20(수)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3-5호)」 발간	국회사무처	
	9/22(금) 14:00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경북) - 실현 가능한 국민공감 개헌, 개헌절차법		경북대학교 경하홀
	9/22(금)	「2023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발간		
	9/1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1호 발간 - 일본의 프리랜서(특정수탁사업자) 보호 입법례	국회도서관	
	9/20(수)	금주의 서평 제646호 발간 - 도서명 : 세습 자본주의 세대 - 저자 : 고재석		
	9/20(수)	「World&Law」 제2023-18호 발간 - 출생통보제, 아동의 권리를 지켜준다고?		
	9/21(목) 10:00	국회도서관-법무법인 세종 간 업무협약 체결 - 지능형법률검색 데이터셋을 활용한 언어모델 개발·협력		법무법인 세종
	9/21(목) 11:00	「AI 보좌관이 도와주는 국정감사」 언론 및 국회 보좌진 간 담회		국가전략 정보센터
	9/18(월)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이슈」 보고서 발간	예산정책처	
	9/19(화)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I~IV)」 보고서 발간		
	9/20(수)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보고서 발간		
	9/21(목) 10:30	제2회 예산정책처 정책현안 연속 토론회 개최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의원회관 1소회의실
	9/22(금) 14:00	제3회 예산정책처 정책현안 연속 토론회 개최 -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의원회관 1소회의실
	9/22(금) 14:00	「통일 심포지엄 : 북한의 법제 변화와 통일사법」 개최	입법조사처	서울법원 종합청사
	9/14(목) 10:00	「Futures Brief」 23-14호 발간 - 뉴질랜드 행복예산의 현황 및 의의	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11(월) 10:30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및 법 개정 촉구 간담회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9/12(화) 10:00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크증권 플러스(+)	윤창현 의원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2(화) 10:0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9/12(화) 14:00	소방배관 시스템 부식문제 해결 촉구 국회 세미나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2(화) 14:00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소병훈·안호영·윤준병· 윤미향·이달곤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2(화) 14:00	해외자원개발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정운천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9/13(수) 10:00	수상레저안전 국회포럼 - 수상레저 안전과 산업 활성화	정점식·안병길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3(수) 10:00	제4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 - 건설엔지니어링의 현재와 미래 생존 전략	엄태영 의원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4(목) 09:30	특허침해소송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주환·김정호· 이수진(동작을)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9/14(목) 14:00	방산 클러스터의 해외 사례와 국내 발전방안	구자근 의원실, 방위사업청, 산업연구원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5(금) 10:00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첨단산업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5(금) 10:00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윤영찬·김병욱 의원실, 한국IT서비스학회	전경련회관 3층
자료집 등	9/13(수)	금주의 서평 제645호 발간 - 도서명 : 가족을 폐지하라 - 저자 : 소피 루이스	국회도서관	
	9/14(목)	현안, 외국에선? 제66호 발간 - 프랑스의 지방 중소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심활성화 사업		

	9/14(목)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Ⅳ) 보고서	예산정책처	
	9/13(수)	이슈와논점 2136호 발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입법조사처	
	9/14(목)	이슈와논점 2137호 발간 -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쟁점		
	9/15(금)	이슈와논점 2138호 발간 - 부동산·가상자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9.11~9.17)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9/12(화)	지적재산권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9/13(수)	조세	가상자산 시세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로 외화를 불법 반출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해당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
9/13(수)	금융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실태 일괄점검
9/14(목)	금융	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및 향후 대응방안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